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광주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노3953 판결 모욕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건 2016노3953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구길(기소), 임찬미(공판)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고정941 판결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의심하는 댓글을 작성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만큼 피해자를 모욕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의 회원이며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28 11:57 부터 3. 31. 23:55 사이에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한성 노트북 판매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C(34세, 남)이 닉네임 'D'으로 '조심하시 길 작성자 글보기 해보니 화려하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자, 'C 나대지 말아라..응? 할 말 있으면 번호까...응?, 엄마..오래오래 살라고....? 엄마팔고 사니? 욕좀 개쳐먹어야 되겠다 너는 사람 잘못건들였어 새끼야, 멍청한 새끼야 답답하네'라는 댓글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댓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댓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특별한 이유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거시한 증거에 근거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 3. 당심의 판단

## 가.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언어 표현이다.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의 각 취지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고나라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조심하시길 작성자 글보기 해보니 화려하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자, 피고인은 "C 나대지 말아라.. 응? 할말 있으면 번호 까... 응?", "아니...G? 인터넷 소설쓰면서 여기서도 소설쓰지말 고 뭐가 문제인지 애기를 하라고 전화해서 응?"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고, 다시 피해자도 피고인의 댓글에 대하여 댓글을 작성하면서 다툼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데에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비방하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한 것이 원인이 되었고 위 댓글은 아무런 욕설이 사용되지 아니한 채 다소 비아냥대는 듯한 표현이 사용된 점 등 댓글 작성의 경위, 표현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댓글 작성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댓글은 비록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 고할 수는 있으나 이를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댓글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수없는 만큼 이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

####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 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 7은 순번 1, 2의 댓글과 달리 욕설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상당한 정도로 훼손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한다.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다.

### 3.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 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를 삭제하는 외에 원심판결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3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면서 그의 어머니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게시글에 대하여 댓글로 비난하자 이에 피고인도 비교적 경미한 욕설을 5회 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유사 사건의 양형례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6. 3. 28. 11:57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범행 부분은 위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판사 김영식(재판장) 이유빈 박동욱